

대학원 학칙

제36조 (논문심사)

- ① 학위청구 논문심사는 본교 전임교원 또는 해당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해당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 중 1인과 해당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된 위원으로 구성된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.
- ② 석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, 박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- ③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에 별도로 정한다.

대학원 학칙 시행세칙

제29조(논문심사의 결정)

- ① 학위논문의 심사는 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.
- ② 학위논문 심사의 합격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2/3이상,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4/5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- ③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은 심사종료 후 심사의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대학원 내규

제63조(학위청구논문의 심사)

- ① 학위청구논문의 심사(이하 “논문심사”라 한다)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논문내용 심사와 구술심사로 한다.
 - ② 논문심사의 결과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위원장은 이를 대학원장이 정한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.
- 제64조(논문심사의 합격 등)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박사학위청구논문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4 이상으로 한다.
 - ③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·보완한 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및 연구과정 운영지침

제48조(논문제출자격)

- ① 일반대학원 학칙 제33조 각 호의 자격요건 및 본 규정의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자는 학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- ② 박사과정의 수료자는 학위논문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 당해 학기에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.
- ③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학위논문주제와 관련된 논문2편 이상을 등재학술지에 발표하여야 하며 등재학술지에 게재하기로 확정된 것도 포함할 수 있다. 단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에 이를 적용한다.

제49조(논문심사위원회)

- ① 논문심사위원회는 5인(논문지도교수 포함)의 박사학위 자격이 있는 전임교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문인사로 구성한다.
- ② 논문심사위원은 학위논문청구 학생의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주임교수가 위촉을 의뢰한다.
- ③ 전항의 경우 논문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을 논문심사위원 후보로 추천하여야 하고,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자를 논문심사위원 후보로 추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임교수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.
- ④ 전항에 기해서 추천된 논문심사위원후보에 의해서 적실한 논문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임교수는 당해 논문지도교수에게 새로운 심사위원후보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⑤ 주임교수는 추천된 심사위원 후보 중 1인을 위원장후보로 지정하여야 한다.

제50조(심사위원명단의 공개)

주임교수는 당해 학기 각 학위청구논문에 대한 논문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.

제51조(심사의 방법)

- ① 학위논문의 심사는 논문의 심사와 논문에 대한 구술시험으로 한다.
- ② 심사위원은 기한을 정해서 논문의 형식 및 내용의 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.

제52조(심사의 종결)

- ① 학위논문심사의 합격은 논문지도교수가 아닌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의 각 찬성으로 결정한다.
- ②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종결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의 결과서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